공익 신고

호주 우정 공사(이하**공사**, APG - Australia Post Group)는, 관련 근로자가 *공익제보법 2013* (**공익제보법**), *기업법 2001* (연방법) (**기업법**), 또는 *조세행정법* 1953 (연방법) (**조세행정법**)에 의거하여 중대한 비윤리적,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자 핫라인을 개설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현재 또는 과거에 공사 관련 근로자였다면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우정 공사(APG)의 직원
- APG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급 또는 무급) 도급업자
- 공사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급업체의 직원이나 하도급업자
- 공사 산하 면허를 취득한 우체국의 면허 소지자
- 공사 산하 면허를 취득한 우체국의 직원
- 공사의 정식 직원이나 동업자. 또는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친척이나 가족 구성원

아울러,

- 자신의 제보가 고객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 자신의 제보가 사적인 업무 관련 사안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 공사 내부자 또는 공사와 관련된 누군가가 우체국 내에서 비윤리적, 불법행위 또는 비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원 제기

민원 제기를 희망하거나, APG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려 사항이 있는 고객은 우편, 이메일, 전화 13 76 78 번으로 고객서비스 센터 (Customer Contact Centre)에 연락하시거나 https://auspost.com.au/about-us/corporate-information/complaints-and-feedback#letter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과 관련된 민원은 공익제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우편물이나 소포의 배달
- 우편물 수거 또는 호주 우체국 시설에서 받은 서비스. 또는
- 고객이나 일반대중이 목격한 호주 우체국 직원의 행위 (예: 운전법규 위반 행위 신고 등)

공사는 모든 민원이 전담 고객서비스 팀을 통해 제기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공익제보 경로를 통해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해당 민원은 관련 부서로 전달되고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사적 업무 관련 사안

다음과 관련된 사안들:

- 공사의 현재 또는 과거 직원과 관련된 사적인 사안
- 차별, 괴롭힘 (제보에 대한 보복의 결과인 경우는 제외) 등과 같이 개인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 또는
-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룹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기타 부적절 행위

위 사안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제보되어야 더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과 관련된 괴롭힘이나 차별에 대한 문제는 HDBMatters@auspost.com.au 또는 1800 641 535 번으로 HDB 핫라인 (HDB Hotline)에 연락하십시오;
- 업무와 관련된 기타 다른 문제들은 인사과 대표나 팀장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민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공익제보 경로를 통해 제기될 경우, 해당 제보는 APG 내부의 관련 그룹에 전달된 후 처리될 것입니다.

공익제보 보호는 무엇인가요?

중대한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상황 발생에 대해, 관련 근로자나 타 기관의 공무원이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공익제보로 간주되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호주 또는 외국의 법, 규정이나 코드 등을 위반하는 행위나 관행 (예: 절도, 마약매매나 사용, 형사적 피해 등)
- 부정부패 또는 사기 행위 (예: 공금남용, 뇌물수수, 부당한 압력, 허위 정보 등)
- 호주우체국 재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처리 또는 중대한 관리부실이나 낭비 (예: 사적인 용도로 업무용 전화 과다 사용, 개인차량을 위한 주유 카드 무단 사용,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룹의 재원/정보 이용 등)
- 환경 또는 일반대중의 건강, 안전을 크게 위협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 인권 보호 기준을 위반할 잠재적 위험이 있는 행위
- 공사에 중대한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손실을 입히거나 공사의 위상 및 브랜드를 훼손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재무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 본 기관의 윤리관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

공익 신고 방법

현재 또는 과거의 호주 우정 공사 (Australia Post Group) 관련 근로자 또는 타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부정행위, 직권 남용, 부적절한 상황 등을 신고하고 싶다면 해당 제보는 **공익 제보 핫라인 (Whistleblower Hotline)** 전화 **1800 799 353 (호주)** 또는 **+61 3 8603 5364 (해외)**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 제보 핫라인은 외부 업체에 의해 관리되며 제보 내용은 호주 우정 공사 담당관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공익 제보이거나 (또는 공익 제보로 간주되거나) 기업법 또는 조세 행정법에 의거한 제보라면 외부 업체로부터 전달된 후 위에 열거된 관련 공익제보법에 의거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또는 호주 우정 공사 공익 제보 포탈 웹사이트 (Australia Post Group Whistleblower Portal) 를 통해 호주 우정 공사 담당관에게 직접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제보시 호주 우정 공사가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최대한 많이 포함해야 합니다:

- 제보자의 이름과 연락처 (밝히기를 권장하지만,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 해당 부정행위의 유형
- 해당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의 정보 (제보의 대상이 도급업자인 경우, 도급업자의 정보 및 위치);
- 해당 부정행위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일
- 해당 부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그 행위 가담자
- 해당 제보를 확인해 줄 증인
- 해당 부정행위에 대해 본인이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보복의 가능성이 우려되는지 여부
- 증빙 자료 (예: 문서, 파일 노트 등)

제보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추측, 개인적인 공격이나 감정적인 언어는 피하십시오.

제보 처리 과정

제보를 받은 공익제보팀은 해당 제보가 공익제보법에 의거한 공익 제보 또는 기업법이나 조세 행정법에 의거한 제보로써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해당 제보에 대한 담당 조사관 배정이 결정되면 제보자는 이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며, 제보자에게 본인의 신원을 조사관에게 밝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보자가 조사관에게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해당 제보의 조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보가 공익제보법에 의거한 공익 제보 또는 기업법이나 조세 행정법에 의거한 제보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기타 다른 정책에 부합할 경우, 공익제보팀은 해당 사안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필요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공익제보법, 기업법 및 조세 행정법에 의거한 보호

제보가 공익제보법에 의거한 공익 제보 또는 기업법이나 조세 행정법에 의거한 제보로 간주될 경우, 제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제보는 시의적절하게 처리되고 비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 제보자는 제보자 보호와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보자는 본인의 공익 제보에 기초하여 본인에게 불리하게 집행 또는 실행되는 계약 관련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보자는 자신의 제보나 제보를 했다는 의심을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됩니다.

이와 같은 보호책 및 면책사항은 제보 조사 완료 이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보하거나, 해당 제보의 결과로 제보자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제보자는 공익제보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보자 의무

공익제보법, 기업법 또는 조세 행정법에 의거하여 제보를 하는 관련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보하지 않는다.
- 제보 행위를 누설하지 않고 제보가 처리 중인 기간에는 비밀로 유지한다.
-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시 적합한 수준의 도움을 제공한다.
- 제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복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신의 감독관이나 공인 담당관, 또는 공익제보팀에 고지한다.
-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요청한다.
- 필요하다면 제보 처리 과정, 본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독립적인 법적 조언을 구한다.

익명 제보

신원을 밝히고 제보하거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익명을 계속 유지한다면 호주 우체국의 해당 제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지거나 아예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가 익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호주 우체국이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소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추가 정보

공익제보법: 공익 제보 - 연방 정부 옴부즈맨

기업법: https://asic.gov.au/about-asic/asic-investigations-and-enforcement/whistleblowing/

조세 행정법: https://www.ato.gov.au/general/gen/whistleblowers/